

# 충청북도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1995. 9. 21

기획경제위원회

### 1. 심사경과

가.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나.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1995년 9월 5일

○ 회부일자 : 1995년 9월 5일

다. 상정일자 : 제11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 ('95. 9. 21)상정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지역경제국장 김 승 기)

가. 제안이유

○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 개정('95. 1. 5) 및 동법시행령 개정('95. 7. 6)으로 에너지 사용자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이 동법시행규칙(통상산업부령제33호'95.8.11)에 신설됨에 따라 "충청북도에너지 사용자등에 대한 과태료 징수조례"를 폐지코자 함.

나. 주요골자

- 충청북도 에너지 사용자등에 대한 과태료 징수 조례 폐지

3.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전문위원 : 김재평)

충청북도 에너지 사용자등에 대한 과태료 징수 조례 폐지 조례(안)을 검토한 바, 이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개정('95. 1. 5) 및 등법시행령 개정('95. 7. 6)으로 에너지 사용자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이 등법시행규칙(통상산업부령 제23호 '95. 8. 11)에 신설됨에 따라 현행 조례 내용이 상위법령과 상충되고, 상위법 우선의 원칙에 의거 "충청북도 에너지 사용자등에 대한 과태료 징수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것으로 승인하여 좀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 음.

5. 토론요지 : 없 음.

6. 심사결과 : 원안 가결 (참석 : 8명, 찬성 : 8명)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